

공동 2013-01-01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학자금대출계정 수지분석, 재정전망 및 학자금대출의 효율적 상환관리연구

연구책임자 : 박 정 수 (이화여자대학교)

공동연구원 : 박 창 균 (중앙대학교)

김 홍 균 (서강대학교)

김 성 옥 (협성대학교)

한 유 경 (이화여자대학교)

안 승 찬 (서강대학교)

연구보조원 : 김 애 진 (이화여자대학교)

보조원 : 장 희 란 (이화여자대학교)

성 지 민 (중앙대학교)



# 제 출 문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한국장학재단이 의뢰한 연구용역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학자금대출계정 수지분석, 재정 전망 및 학자금대출의 효율적 상환관리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12

- 주관연구기관명 : 이화여자대학교
- 연구 기 간 : 2013. 8. ~ 2013. 12. 31
- 주관연구책임자 : 박 정 수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한국장학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요 약

## I. 서론

- 한국장학재단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설립이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부실채권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인적자본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구조에 보다 적절한 학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3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제도 도입
- 학자금 대출제도 특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대학원생을 제외하고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든든학자금)로 일원화된다고 할 때 지속가능한 대출사업의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2009년부터 시작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연체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부실채권 관리 체제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
- 본 연구는 학자금대출 계정의 수지분석 및 재정전망을 통한 향후 학자금대출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개선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 도출을 목적으로 함
  - 학자금대출 계정의 수지분석 및 재정전망 모형구축 및 추산
  - 든든학자금 장기미상환자 재산조사를 위한 소득환산율 산

## 출

- 학자금대출 상품별 효과적인 상환을 위한 정책 방안 제안
- 해외 주요국의 상환관리 사례연구
- 고등교육기관별 대출 한도의 운용성과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적정 대출한도 수립의 방향성 제시
- 본 연구는 학자금대출 계정의 수지분석 및 재정전망을 시도함에 있어서 든든학자금제도 시행 초기단계인 관계로 실제 코호트(cohort)별 대출 data 및 상환 data를 이용할 수 없어서 수지추정에 많은 가정과 조정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 결과해석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함
- 취업률과 평균소득 추정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 소득계층별 대출자료 등의 확보 미비로 시사점도출에 상당히 많은 제한이 있었음을 감안해야 함

## II.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제도

-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 이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tuition) 및 생활비(living expenses)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
-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고유 업무로 제공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상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하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학자금 대출

- 든든학자금 대출은 2년제 및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고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을 상환하는 융자 상품
  - 가구 소득이 7분위 이하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금 전액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 대출
  -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 일정 비율(현재 20%)을 의무상환액으로 납부
- 일반학자금 대출은 소득 8분위 이상의 학부생과 모든 대학 원생(석사 및 박사)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고 소득 발생과 관계없이 미리 약정한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원리금이 상환되는 융자 상품
  - 채무자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상환방식을 미리 선택하고 그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대출 상품
  - 일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 전액과 연간 200만원의 생활비 대출 가능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최장 10년)과 상환기간을 합하여 최대 20년이며 이자는 고정금리로 대출 시 결정
  -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미리 선택한 상환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 방식이나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

### Ⅲ. 학자금대출계정 수지예측

#### 1. 개요

-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학자금 대출을 별도 단위(unit)로 분리하여 수지 예측 모형 구축
  -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의 상환방식이 달라 현금흐름 패턴이 상이할 뿐 아니라 대상자 또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두 대출상품을 별개의 단위로 설정하고 각각에 대하여 수지예측 모형을 구축
  -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학자금 대출의 수지를 연도별로 합산하여 학자금 대출계정 전체의 수지를 예측
- 든든학자금 대출 단위와 일반학자금 대출 단위는 각각 현금유입모듈(cash inflow module)과 현금유출모듈(cash outflow module)로 구성
  - 학자금대출 계정의 수지예측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계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cash inflow)과 현금유출(cash outflow)을 예측하고 양자의 차이를 계산
  - 특정 연도의 현금유입이 현금유출보다 많아 현금의 순유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채권상환에 사용하거나 적립금으로 누적하고, 현금유출이 현금유입보다 많아 현금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규 채권 발행이나 적립금을 감축하여 보전하는 것으로 가정
  - 현금유입은 학자금 원리금 정상 상환 및 조기 상환, 그리고 여유자산 운용수입에서 발생하며 현금유출은 학자금 신규 및 추가 대출, 발행 채권 및 차입금 이자 지급, 관리비

용에서 발생

- 학자금 대출자의 인구·경제적(socio-economic) 특성에 따라 학자금 대출계정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패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자를 학교별, 성별, 전공계열별로 분류하여 구분하고 각 그룹에 대하여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예측한 후 합산
  - 든든학자금의 경우 채무자의 출신 학교의 학제(2년제/4년제), 성별(남/녀), 전공(인문사회/자연이공/예체능)에 따라 12개 그룹으로 분류
  - 인문사회계열에는 인문, 사회, 교육, 기타 계열이 포함되고 자연이공계열에는 자연, 이공, 의학 계열이 포함됨.
- 일반학자금의 경우 채무자의 출신 학제(2년제/4년제/석사/박사), 성별(남녀), 전공(인문사회/자연이공/예체능/전문석사(석사의 경우만))에 따라 26개 그룹으로 분류

## 2. 든든학자금 대출계정 수지 예측

- 든든학자금 대출 계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출은 등록금 및 생활비 신규(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 포함) 대출, 차입금 이자 지급, 관리운영경비로 구성<sup>1)</sup>
- 등록금 및 생활비 신규대출은 매 학기 발생하는데 모형에

---

1) 이하에서는 신규대출로 인한 현금 유출만을 고려하였음. 차입금(발행채권)에 대한 이자가 매년 재정에서 보조되는 이자대납과 유사한 규모라고 가정하여 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관리운영경비는 재단의 운영경비가 재단의 운영경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되어 재정에서 보조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든든학자금 대출 계정의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제외하였음.

서는 1년 단위로 대출액을 예측

- 차입금 이자는 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 관리운영경비는 학자금대출 계좌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인적·물적 비용인데 학자금 대출계정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출입의 규모에 비례한다고 가정
-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용도와 생활비 용도로 구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매년 학자금 대출 전체 규모를 파악
- 매년 학자금 대출 규모는 학자금 대출자 수와 1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액의 곱으로 계산
  - 대출자 수는 특정 연도의 총 재학생 중 소득 7분위 이하 가구에 속하여 든든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이 있는 학부 학생 중에서 실제 대출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산출
    - 학자금 대출자 수는 인구구조, 구체적으로 대학 진학 연령 인구 추이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데 대학진학률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추가하면 매년 대출자 수는 재학연령인구의 일정 비율로 고정
    - 대학 진학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대출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물가상승에 연동된 등록금 인상으로 인하여 1인당 대출액은 꾸준하게 증가
  - 학자금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2013년 1학기 학자금 대출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향후 직전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
- 연도별 총 대출액(현금 유출)은 매년 학자금 대출자 수와 1인



- 당 평균 학자금 대출액 예측치를 곱하여 산출
- 연간 든든학자금 신규 대출액은 2018년 1조 9,809억 원을 정점으로 대학진학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5년 1조 6,798억 원까지 하락
  - 2026년 이후부터는 대학 진학 인구 감소세가 안정되는 반면 물가상승에 따른 학자금 상승으로 신규 든든학자금 대출 규모가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
- 든든학자금 대출 계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은 대출 원리금 상환과 이자 수입
- 대출자가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의거하여 든든학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 짐.
    - 조기상환으로 인한 현금 유입은 분석에서 제외
  - 이자수입은 예금이나 투자자산 등 학자금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의미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거의 전 기간에 걸쳐 학자금 대출계정이 누적 적자를 기록할 것이므로 이자 수입은 분석에서 제외
- 4년제 대학의 경우 든든학자금 대출 상환대상자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환액 예측은 연도별 상환개시 의무자 수와 상환 개시 의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을 산정하는 데서 출발
- 군 복무로 인하여 성별로 최초 상환의무자가 발생하는 시기는 달라질 것인데 남자의 경우 4년제는 2010년 19세 대출자, 2년제는 2012년 19세 대출자를 2014년 상환대상자로 설정할 수 있음.
    - 4년제 대학 남자 졸업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

면 2016년이 되어야 상환의무자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2년제 대학 남자 졸업자의 경우 역시 군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2010년 19세 대출자를 2014년 상환의무 발생자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상환 대상자 1인당 총 대출액은 1인당 연간 총 대출액과 명목 국고채 금리를 감안하여 계산 가능
- 든든학자금 대출의 상환은 대출자의 취업 여부와 취업 후 소득 수준에 의존하므로 이를 고려한 모형의 구축이 필요함.
  - 대출자의 졸업 후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되므로 든든학자금 계정의 현금 유입은 노동시장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 대표적 대출자(representative borrower)가 졸업 후 노동시장 참여 시 당면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연도별로 상환액의 기댓값을 계산하고 이를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확대 적용함으로써 연도별로 전체 상환 예상금액을 추산
  - 상환예측 모형에 투입될 파라미터 값, 특히 그룹별 취업확률과 평균 임금은 2008년~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계산
- 연도별 상환 총액에서 연도별 대출 총액을 차감하여 연도별 순현금흐름을 계산하고 매년 순현금흐름과 이자 지급액을 합하여 든든학자금 대출 계정 수지 예측
  - 전년도 누적 순현금흐름, 즉 채권 발행 잔고에 명목 국고채 이자율을 감안하여 금년도 초기의 누적 순현금흐름을 계산하고 여기에 금년도 순현금흐름을 더하여 금년도 말의 누적 순현금흐름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가 채권이자를 대납하여 주고 있으므로 전년도 누적 순현금흐름에

금년의 순현금흐름을 더하여 금년의 누적 순현금흐름을 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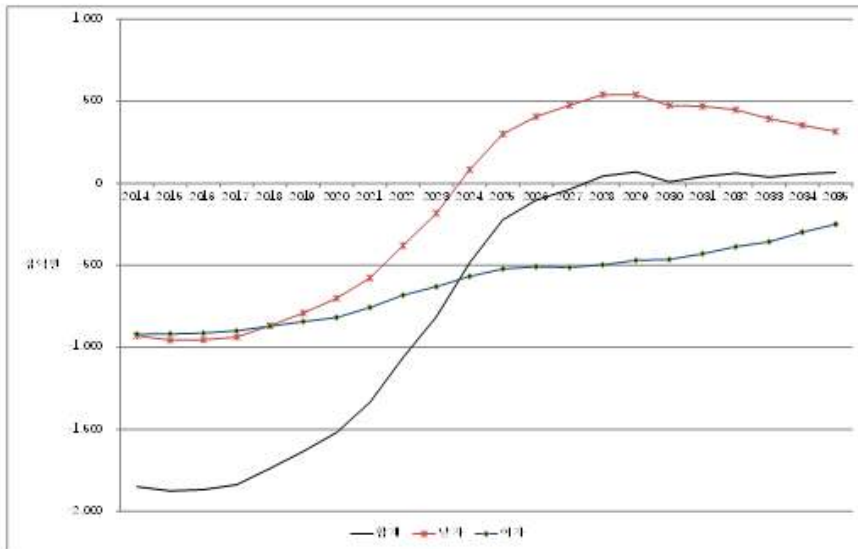
- 2014년 말 누적 순현금흐름은 -6조 6,1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에는 누적 적자규모가 20조 7,620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순현금흐름 적자의 대부분은 여성에 대한 대출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누적 순현금흐름의 성별 차이는 취업률과 임금의 성별 차이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든든학자금 연도별 순현금흐름 및 누적 순현금흐름 예측

(단위: 십억원)

연도	상환 총액	대출 총액	순현금흐름	누적 순현금흐름
2014	28.88	1,879.17	-1,850.29	-6,611
2015	55.62	1,930.73	-1,875.11	-8,486
2016	94.87	1,962.92	-1,868.05	-10,354
2017	140.32	1,977.59	-1,837.27	-12,191
2018	242.19	1,980.96	-1,738.78	-13,930
2019	343.86	1,978.72	-1,634.86	-15,565
2020	449.76	1,969.34	-1,519.58	-17,084
2021	561.70	1,896.99	-1,335.33	-18,420
2022	774.52	1,836.63	-1,062.10	-19,482
2023	1,001.15	1,814.77	-813.63	-20,295
2024	1,246.93	1,731.60	-484.66	-20,780
2025	1,457.81	1,679.77	-221.96	-21,002
2026	1,588.06	1,689.83	-101.77	-21,104
2027	1,692.16	1,730.14	-37.98	-21,142
2028	1,775.26	1,731.88	43.38	-21,098
2029	1,820.10	1,751.91	69.09	-21,029
2030	1,856.22	1,847.85	8.37	-21,021
2031	1,893.66	1,854.27	39.39	-20,981
2032	1,936.39	1,875.25	61.14	-20,920
2033	1,957.03	1,920.21	36.82	-20,883
2034	1,992.76	1,936.43	56.33	-20,827
2035	2,038.85	1,973.70	65.15	-20,762

## 든든학자금 대출계정 순현금흐름 추이 예측



### 3. 일반학자금 대출계정 수지 예측

- 일반학자금 대출 계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출은 든든학자금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및 생활비 신규(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 포함) 대출, 차입금 이자 지급, 관리운영경비로 구성<sup>2)</sup>되는데 든든학자금과 동일한 방법론으로 추정
- 일반학자금 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9,291억 원으로 정점에 달한 후 하락세에 접어들어 2032년 8,669억 원에 도달한 후 인구구조 안정과 등록금 인상에 기인하여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이하에서는 운영경비로 인한 현금유출은 계산에서 제외하였음. 운영경비가 재단의 운영경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되어 재정에서 보조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일반학자금 대출 계정의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임.

- 일반학자금 대출 규모는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을 합친 전체 학자금 대출의 30~35%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반학자금 대출의 연간 현금유입은 원리금 (정상) 상환, 조기상환(prepayment), 부실채권(장기연체채권) 원리금 회수 등으로 구성됨.
- 원리금 상환액은 거치기간 만료 여부, 대출 상환 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등에 의하여 결정됨.
  -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발생하고 거치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는데 졸업 직후부터 상환을 계획한다고 전제
  - 상환기간 또한 거치기간과 마찬가지로 학위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으로 가정하되 전공 또는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4년제 대학과 박사과정의 경우 평균 상환기간을 6년, 2년제 대학과 석사과정의 경우 평균 상환기간을 4년으로 가정
  - 상환개시 시점 대출 총액 중 매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평균 이자율을 산정하고 이를 대출 만기까지 적용되는 단일의 이자율로 설정
  - 상환방식은 채무자가 대출 계약 체결 시 원금 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대출자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한다고 가정함.
- 조기상환은 일반적으로 대출 발생 또는 상환개시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였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대출 총액 대비 조기상환 총액을 나타내는 조기상환율은

상환개시 후 경과된 시간, 즉 대출의 빈티지(vintage)에 따라 역-U자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

- 남자 4년제 인문사회계열 출신 대출자의 조기상환율을 1년 4.0%, 2년 6.5%, 3년 5.5%, 4년 2.5%, 5년 이상 0%로 설정
- 남자보다 여자의 조기상환율이 낮고, 인문사회계열에 비하여 자연이공계열의 조기상환율이 높으며 예체능계의 조기상환율이 낮다는 경험을 감안하여 각 그룹의 연도별 조기상환율을 조정
- 더하여 2년제 대학 출신 대출자의 조기상환율이 낮은 소득으로 말미암아 다소 낮을 것이며 박사과정 출신 대출자의 조기상환율은 다소 높을 것으로 가정하여 각 연도별로 조기상환율을 조정

○ 연체율은 과거 경험적인 평균적인 연체율에서 출발하여 성별·학위별·전공별로 상환능력의 차이를 감안하여 조정

- 연체율은 대출의 빈티지(vintage)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는데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2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예체능계에 비하여 자연이공계 졸업자가 연체율이 낮다고 가정

○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는 회수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직전 연도 말을 기준으로 누적된 장기연체채권의 15%가 회수된다고 가정

○ 이자율은 연간 대출 총액을 가중치로 설정하고 매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율, 즉 국고채 명목금리의 가중평균을 추정하고 이를 적용

□ 일반 학자금 대출계정 순현금흐름 및 누적순현금흐름 예측치

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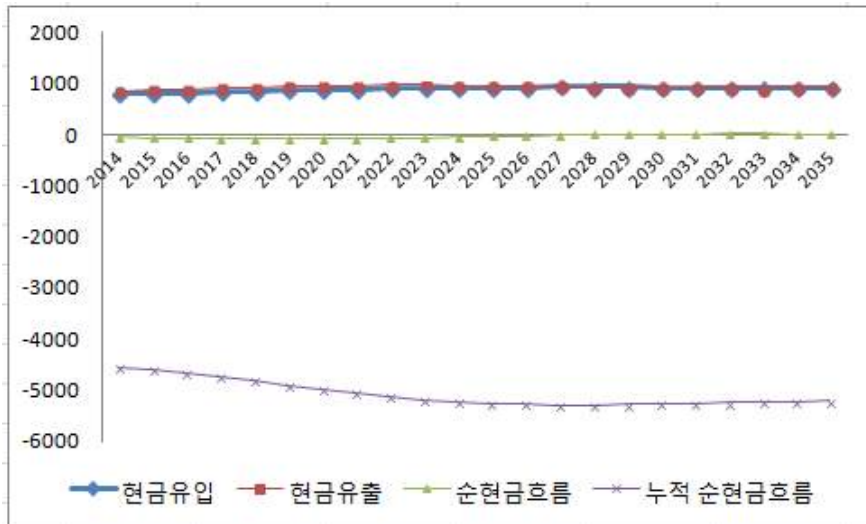
일반학자금 연도별 순현금흐름 및 누적 순현금흐름 예측

(단위: 십억원)

연도	현금유입	현금유출	순현금흐름	누적 순현금흐름
2014	803.84	858.93	-55.09	-4,555
2015	814.07	872.01	-57.94	-4,613
2016	825.29	888.90	-63.61	-4,677
2017	837.70	908.05	-70.35	-4,747
2018	851.31	928.39	-77.08	-4,824
2019	865.73	947.49	-81.76	-4,906
2020	880.37	963.31	-82.94	-4,989
2021	893.42	967.34	-73.92	-5,063
2022	905.16	971.70	-66.54	-5,129
2023	915.89	976.69	-60.8	-5,190
2024	923.05	963.64	-40.59	-5,231
2025	927.89	955.33	-27.44	-5,258
2026	932.25	956.96	-24.71	-5,283
2027	935.26	952.31	-17.05	-5,300
2028	934.58	930.69	3.89	-5,296
2029	932.58	921.29	11.29	-5,285
2030	932.15	929.69	2.46	-5,282
2031	930.22	919.28	10.94	-5,271
2032	926.84	907.67	19.17	-5,252
2033	923.63	905.48	18.15	-5,234
2034	921.76	911.18	10.58	-5,223
2035	920.56	913.73	6.83	-5,217

### 일반학자금 연도별 순현금흐름 및 누적 순현금흐름 추이

(단위: 십억원)



#### 4. 학자금 대출계정 수지 예측

- 학자금 대출계정 수지는 2035년 약 26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든든학자금 대출계정과 일반학자금 대출계정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합산하여 학자금 계정 전체의 현금흐름을 계산
  - 학자금 대출제도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상환을 시작하는 대출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순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데 2028년경 학자금 계정의 순현금흐름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부터 2027년까지 30여년의 기간 동안 누적된 연간 순현금흐름의 적자와 차입금 이자 지급으로 말미암아 누적 현금 흐름은 지속적인 적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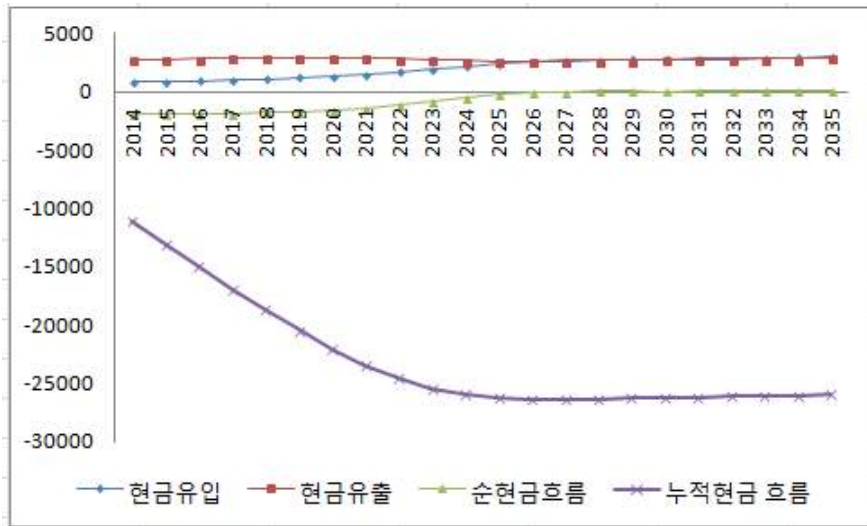
학자금 대출계정 수지 예측

(단위: 십억원)

연도	현금유입	현금유출	순현금흐름	누적현금 흐름
2014	833	2,738	-1,905	-11,166
2015	870	2,803	-1,933	-13,099
2016	920	2,852	-1,932	-15,031
2017	978	2,886	-1,908	-16,938
2018	1,094	2,909	-1,816	-18,754
2019	1,210	2,926	-1,717	-20,471
2020	1,330	2,933	-1,603	-22,073
2021	1,455	2,864	-1,409	-23,483
2022	1,680	2,808	-1,129	-24,611
2023	1,917	2,791	-874	-25,485
2024	2,170	2,695	-525	-26,011
2025	2,386	2,635	-249	-26,260
2026	2,520	2,647	-126	-26,387
2027	2,627	2,682	-55	-26,442
2028	2,710	2,663	47	-26,394
2029	2,753	2,673	79	-26,314
2030	2,788	2,778	11	-26,303
2031	2,824	2,774	50	-26,252
2032	2,863	2,783	80	-26,172
2033	2,881	2,826	55	-26,117
2034	2,915	2,848	67	-26,050
2035	2,959	2,887	72	-25,979

### 학자금 대출계정 수지 추이

(단위: 십억원)



## IV. 장기미상환자 재산조사를 위한 소득환산을 산정 검토

### 1. 장기미상환자 재산조사의 법적 근거

- 장기미상환자란 ① 졸업 후 3년까지 기준소득에 미달하여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또는 ②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 개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총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자 (법률 제3조)<sup>3)</sup>

3) 2010년 시행된 든든학자금의 장기미상환자(기준소득 미달) 최초 발생 시점은 2014년이 됨. 이에 따라 현재 장기미상환자의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되지 않음

- 이 때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재산조사 및 재산의 소득환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소득환산율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 장기미상환자는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과 상환기준소득에 일정 배수를 곱한 상환기준 소득인정액 간 차액의 20%(상환율)를 의무상환해야 함

〈용어 설명〉
* 의무상환액 =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율(20%)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 × 일정 배수
- 배수 : 미혼(1.5), 기혼(1.8), 기혼/쌍방대출(2.0)
- 시행령 제15조
* 2013년 상환기준소득 = 연 850만원
- '12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795만원에서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상 근로소득공제액 945만원 차감
-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 2.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개념과 산정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은 개념상 개별가구(개인)의 능력을 단일 개념의 지표로 측정하는 것으로 stock을 flow로 전환하여 동일 척도로 환산하기 위해 소득환산율 적용. 다만 재산의 소득환산율 산출방식은 재산종류별로 상이
-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환산율 설정원리는 매각 후 사용모델

- 기초공제 초과 재산을 특정 기간 동안 매각한다고 가정
- 비주거용 일반재산의 경우 2년 내 사용을 가정함에 따라  
 $1 \div 24\text{개월} = \text{월 } 4.17\%(\text{연 } 50\%)^4)$

종류별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 3. 모의분석 결과

- 통계청 「2012 가계금융 복지조사 데이터」 를 활용
- 의무상환대상자를 추정하기 위해 5가지의 소득환산율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가정별 소득인정액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의무상환대상자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

소득환산율에 따른 가정별 환산방식 및 소득인정액 세부 구성

가정	기준	소득평가액	일반 재산 소득환 산율	금융 재산 소득환 산율	소득 평가액	재산 소득 환산액	소득 인정액
1	기초생활	제도별 산식에 따름	월4.17%	월6.26%	2,023 만원	2,468 만원	4,492 만원
2	기초노령		연5%		1,686 만원	118 만원	1,804 만원
3	ICI 영 유아 기초 노령	근로·사업 ·재산· 공적 이전 소득의 총합	월4.17%		2,009 만원	2,427 만원	4,436 만원
4			월(4.17÷3)%			811 만원	2,820 만원
5			연5%			243 만원	2,252 만원

4) 주거용/비주거용 재산 구분은 2013년부터 적용

소득5분위별 소득인정액

(단위:만원)

가정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	소득평가액	0	663	2,040	3,074	4,317	2,023
	재산환산액	0	202	356	1,492	10,311	2,468
	소득인정액	0	866	2,397	4,565	14,629	4,492
2	소득평가액	0	397	1,432	2,325	4,389	1,686
	재산환산액	0	40	27	114	567	148
	소득인정액	0	437	1,459	2,439	4,956	1,834
3	소득평가액	2	620	2,057	3,064	4,293	2,009
	재산환산액	25	285	403	1,810	10,817	2,663
	소득인정액	27	904	2,460	4,874	15,110	4,672
4	소득평가액	0	513	1,964	2,931	4,642	2,009
	재산환산액	9	159	190	698	3,399	890
	소득인정액	9	671	2,154	3,629	8,041	2,899
5	소득평가액	0	469	1,904	2,827	4,854	2,009
	재산환산액	3	72	91	268	900	266
	소득인정액	3	540	1,994	3,095	5,755	2,275

\*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 각 수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소득환산을 가정에 따른 의무상환자 대상자 비율

(단위:%)

가정	기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하위 70%
					60-70%	70-80%			
1	A	0	11.7	87.6	94.6	94.3	95.4	58.1	42.3
	B	0	15.3	100.0	100.0	100.0	100.0	63.4	47.7
2	A	0	0	39.5	95.7	99.6	99.3	47.0	26.6
	B	0	0	41.8	100.0	100.0	100.0	48.2	28.0
3	A	0	10.2	87.9	94.6	91.6	96.1	57.6	41.8
	B	0	16.9	100.0	100.0	100.0	100.0	63.5	47.9
4	A	0	3.4	89.7	95.6	97.0	98.8	57.6	40.3
	B	0	5.2	98.1	100.0	100.0	100	60.6	43.8
5	A	0	0	89.0	99.3	99.3	99.8	57.6	39.6
	B	0	0	95.6	100.0	100.0	100.0	59.1	41.6

\* A : 소득평가액 기준, B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환산율 가정에 따른 소득5분위별 의무상환액

(단위:만원)

가정	기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하위 70%
					60-70%	70-80%			
1	A	0	60	176	306	413	606	372	209
	B	0	63	207	467	791	2,634	1,098	272
2	A	0	0	80	161	233	590	344	127
	B	0	0	81	167	266	699	394	131
3	A	0	59	176	322	412	594	373	215
	B	0	66	219	505	880	2,730	1,149	289
4	A	0	45	143	275	362	645	373	186
	B	0	45	164	351	537	1,315	633	221
5	A	0	0	125	245	329	679	373	168
	B	0	0	134	278	397	858	448	184

\* A : 소득평가액 기준, B : 소득인정액 기준

- 든든학자금 자격기준인 소득하위 70%만을 대상으로 볼 때 모든 분석 가정에서 1인당 연평균 의무상환액이 300만원 미만 (월 평균 최대 24만원)으로 추계. 이는 가장 높은 환산율을 적용(연 50%)하더라도 의무상환에 따른 가계곤란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가정 3, 즉 ICL 소득평가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방안이 법령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을 따르면서 가장 효과적인 상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도시행의 초기임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빈곤한 의무상환자' 혹은 전년도 기준으로 측정

되는 소득인정액과 현재 소득활동 간의 시차문제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4. 정책수립 시 고려할 사항

- 든든학자금의 경우 취업이 빨리 되고 소득이 높으면 상환을 빨리 마칠 수 있는 반면, 취업이 어렵고 소득이 낮으면 상환기간이 길어져 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상환액이 커지는 문제점 발생(국회예산정책처, 2013)
- 재산의 소득환산에 대한 이론적인 객관적 기준은 모호할 뿐 아니라 기존 제도들의 경우에도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나 ‘재산의 2년 소진설’처럼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근거해 있는 한계가 있음.
-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 환산방식은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나 높은 환산율(연 50%)로 인해 상환대상자의 관련 민원도 함께 증가할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 기준은 낮은 환산율(연 5%)로 인해 상환규모 또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민원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적용 시 보다 줄어들 것인가는 확정하기 어려움.
- 재산의 소득환산과 소득환산율은 복잡한 예외조항을 수반. 따라서 ICL도 ① 재산별로 환산율을 차등화할 것인지(기초생활) 아니면 동률로 적용할 것인지(기초노령), ② 여러 공제들(특히 기초노령의 경우 대도시 기본공제액은 1억8천)을 동일하게 타 제도들처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적용하지 않을 것인지, ③ 한번 확정된 환산율을 고정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

기별로 개정의 여지를 남길 것인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ICL 제도운영을 볼 때 상환의무 부과에 재산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음. 또한 재산소득환산 방식은 대체로 많은 예외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취합이 용이하지 않은 개인(가구) 금융·자산 등의 정보가 요구됨에 따라 높은 행정비용을 수반함. 따라서 어떤 환산방식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이러한 제반 비용에 비해 얻게 될 실익에 대한 고려도 함께 동반할 필요가 있음.

## V. 주요국 학자금대출 재정전망 및 상환관리의 사례 분석

- 학자금 대출제도 현황
  -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각 국가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인원과 이용금액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현황 증가와 함께 각 국가의 학자금 대출 연체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학자금대출 제도 재정전망
  - 4개국 모두 학자금대출 이용률과 연체율 및 채무불이행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위축으로 질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여 졸업생들의 경제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



고 있음.

- 한편, 대부분의 국가들은 학자금대출 제도의 금리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결과적으로 각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각국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함.
- 고등교육 확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이용증가와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과 고용 불안 확대에 의한 채무불이행율 증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학자금대출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야 함.
  - 따라서 학자금대출 정책은 고용정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
  - 호주의 고등교육 체계적인 평가기준을 통한 대학 질 평가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 미국은 표준상환, 확대상환, 소득민감상환, 소득연계상환, 소득기준 상환 등 다양한 상환계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국과 호주는 자발적 상환제도와 의무적 상환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은 졸업 후 연동계좌를 통해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학자금 대출 사후관리 방법

- 미국은 체계적인 사후 관리 제도를 갖추고 있음.
  - 상황에 따라 상환연기와 상환보류를 할 수 있으며, 연체발생부터 연방교육청의 변제 이후까지 각 기간별 사후 관리 방법이 매우 체계적임.
  - 또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 및 상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이용하고 상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그리고 각 대학들이 입학상담과 종료상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연체 예방활동을 하며, FSA 홈페이지에서 입학/재정인식/종료상담 체험(demo)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상담은 이해하기 쉽게 대출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영국은 세금 납부 시 대출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는 장기미상환자의 개념 및 이에 대한 특별 관리가 없음.
  - 특별한 사후관리제도 대신, 체계적 대학평가를 통해 학자금 대출재정 운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등교육 질 관리를 하고 있음.

## VI. 학자금대출의 효과적인 채권관리방안

### 1. 문제점

- 자발적 상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
  - 효과적인 상환관리의 차원에서 조기상환을 유인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조기상환의 인센티브가 크지 않음
- 학자금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신용위험의 적절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정책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대출상품 성격으로 인하여 신용위험 관리 수단에 제약
- 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출 프로그램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출채권 관리의 전 단계(생애주기)에 걸쳐 효과적인 신용위험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
- 부실채권 회수율 제고를 통한 손실 최소화, 채무자의 과도한 상환부담 경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라는 원칙 하에서 부실채권 처리나 채무재조정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
- 부실채무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실채권 처리 및 채무재조정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 회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실채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 2. 정책방향

- 종합적인 시스템관점에서 자산 취득(대출)에서 보유 및 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시스템을 통해 대출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든든학자금대출 상환관리
  - 장기수지분석결과 또 하나의 국민연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하였는바 선제적인 상환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정치의 마련이 필요함
  - 대출계정의 선순환구조 확립 및 균형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대출계정관리를 통한 수지균형노력이 절실함. 대출제한대학 지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퇴출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대학의 적극적인 신용위험관리 노력을 교육부 지원 사업평가 등에 반영 필요
  - 효율적 상환관리를 위해서 장기 미상환에 대한 평가체제 구축 및 이에 대한 채권상각(write-off)처리 및 이를 위한 총당금 설정 한도 인상 등의 제도적 보완 필요
- 일반상환학자금 상환관리
  - 심사기능 강화를 통한 정상 및 연체채권 관리 실효화

-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효율적 상환체계 구축
- 효율적 상환관리를 위해서 성실상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 채무재조정을 통해 인센티브 강화
- 부실채권 위험 관리
  - 일반상환학자금 자체 채무조정제도 내 사각지대 해소
    - 단기적 채권회수 중심에서 신용회복을 통한 중장기적 회수증대방안 강화를 위한 신규 채무조정제도 도입
  -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부실채권 관리방안 추진
    - 상환가능성에 따라 부실채무자를 그룹화하고, 채무자군 별로 차별적 회수정책도입

## VII. 대학별 대출한도 설정제도의 성과분석

### 1. 대출한도 설정제도의 문제점

- 법적구속력의 부재: 「장학재단법」 제49조의 3과 제24조의11, 그리고 「장학재단법 시행령」 제21조의 5 등에는 대출한도 설정제도의 법적근거만 제시되어 있을 뿐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교육부실 대학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의 제시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항은 없음.
- 평가체계의 문제: 2011년 대학구조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도입

된 정부재정지원 제한제도와 대출한도 설정제도는 기본 방향이 다름에도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출한도 설정제도의 평가지표가 재정지원 제한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또한, 소득 측정이 불가능한 종교계와 예·체능계 대학의 경우 대출제한 대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대학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에서 대학이 원하지 않으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출제한 대상에서도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평가방안의 잦은 변동: 대출제한 대학 선정 설정방안의 추이에서 보았듯이, 2011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대출제한 대학 선정의 설정방안은 매년 변동 사항이 있었음. 특히 평가지표는 그 비율이 매년 조정되어 대학으로 하여금 혼동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저소득층의 학교선택권 부재: ICL은 학생이 자신의 대학교육 비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학 졸업 후 상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 후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학교선택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제도임. 그러나 소득 1-7분위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자신의 교육비용-편익에 대한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차단됨.

## 2. 대출한도 설정제도의 정책목표 대비 성과분석

-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의 2011~2013년까지의 성과 추이를 보면,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3년 연속으로 2개 이상의 부문에서 지표가 개선된 대학은 49개 중에서 12교로

24.4%임.

- 재정건전성 확보: 취업률 지표에서 2011~2013년 3년 연속으로 성과가 개선된 학교는 경주대학교를 포함하여 8교, 연체율 지표는 남부대학교를 포함하여 5교로 총 13교임.
- 부실대학의 구조조정: 신입생 충원율 지표에서 9교, 중도탈락 학생비율 지표에서 8교, 총 17교임.
  - 지난 3년간 부실대학이 구조조정 된 사례는 2012년 2월 동우대학이 경동대학교와 통합하여 경동대학교 제2설악캠퍼스, 2012년 3월 제주산업정보대학과 탐라대학교가 통합하여 제주국제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건동대학교는 2012년 7월, 경북외국어대학교는 2013년 8월 자진폐지, 성화대학,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는 폐쇄, 벽성대학은 폐쇄명령을 받는 등 9건에 불과함.
- 대학교육의 질제고: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에서 2011년~2013년도 3년 연속으로 성과가 개선된 학교는 루터대학교를 포함하여 12교, 교육비 환원율 지표에서 14교, 총 26교임.

### 3. 시사점

#### 가. 행정제재 등 보완적 수단 마련

- 정책목표 대비 성과달성 평가에서 보았듯이,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어 ‘제한대출 그룹’이나 ‘최소대출 그룹’에 속하게 된다고 해서 대학의 교육여건이나 성과가 즉시 개선되는 것은 아님.
- 성과분석 대상인 2011~2013학년도의 49교 중에서 2회 이상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13교로 24.4%임. 4년

연속으로 선정된 학교 2교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은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임

- 「한국장학재단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제재 및 금전적 제재 등의 보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나. 평가방법의 개선

- 재정지원제한 제도와의 분리: 재정지원 제한 제도와의 분리를 통해 평가지표, 평가대상 등이 재정지원 제한제도와 차별성을 가져야 함.
-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연계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표도 학자금대출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원 제한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각 사업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출제한 대상의 확대: 소득 1-7분위 학생들도 대출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자신의 교육비용 부담에 대한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정보와 학교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예·체능계와 종교계도 대출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대출제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14학년도부터 경영부실대학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이러한 맥락임.



#### 다. 대출제한 적용방법의 개선

- 대출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1안은 대출제한 대학과 대출금지 대학으로 구분하여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면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 대출 모두 50%만 대출을 허용하고, 대출금지 대학으로 선정되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임.
  - 제2안은 대출제한대학과 대출금지대학의 구분 없이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대출제한 그룹을 지정하는 방법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첫째, 대출제한 대학과 대출금지 대학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대출제한 대학은 질 평가 하위 5% 혹은 절대지표 2개 이상 미충족 대학, 대출금지 대학은 절대지표 4개 미충족 혹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부실대학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있음.
  - 둘째, 대출제한 대학과 대출금지 대학을 구분하지 않는 방안으로, 동 방안을 택할 시에는 대출제한 대학만 지정하게 됨.

## VIII. 정책제언

### 1. 제도적 접근

-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대출채권 관리의 전 단계에 걸쳐 효과적 신용관리체제 구축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학자금 대출자의 증가 및 대출제도의 성숙단계 진입으로 순 현금흐름의 지속적 개선이 예상되지만 저부담 고급부적인 제도 설계로 인해 학자금대출수지 적자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재정전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 학자금 용자제도의 위기적인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팀 마련 필요
- 상환관리의 실효성 확보방안
  - 자발적 상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및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페널티 부족
  - 장기미상환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상환능력이 없거나 극히 취약한 채무자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채무부담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대출 공급관리의 정책적 접근
  - 정책 목적 수행 및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른 근원적 제약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서 대출의 공급, 상환 및 연체 채

권관리 단계에서 법률적·현실적 제약 존재함

- 특히 요건대출의 성격을 가진 학자금대출은 대출요건을 정부가 설정하고 신용위험부담은 장학재단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정책적으로 대출사업의 특수성 및 신용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2. 정부3.0접근: 이해당사자의 협력

- 협업과 소통의 정부 3.0방식을 활용하여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장학재단, 각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시스템화할 필요
- 학자금 대출제도는 해당 대학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
- 따라서 교육부의 특성화 지원 관련사업 추진 시, 단위대학의 학자금 성실 상환관련 등 실적 반영 필요
  - 특히 여성의 고용확대 및 동일 노동 동일 급여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역할 제고
  - 각 대학의 교육 품질에 대해 체계적인 질 평가 후 이를 대학구조조정정책으로 연계하는 방안
  - 그리고 재정지원제한제도와 분리된 대출제한 대학 선정 등의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